

1. 개정이유

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과 동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유효기간이 갱신된 인증기관과 기 지정 인증기관 고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일부 개정문

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」 일부개정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

연번	명 칭	대표자	소재지	지정 유효기간	비고
1	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	조정훈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7층, 8층	'24.01.22. ~ '28.08.31.	갱신
2	한국교육녹색환경 연구원	맹준호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, 7층	'24.01.22. ~ '28.08.31.	갱신
3	한국부동산원	손태락	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	'24.01.22. ~ '28.08.31.	갱신
4	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	강장진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. 서울상공회의소회관 12층	'24.01.22. ~ '28.08.31.	갱신
5	한국환경건축연구원	이경희	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,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호	'24.01.22. ~ '28.08.31.	갱신
6	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	조영태	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	'23.09.01. ~ '28.08.31.	기지정

2. 기타사항

-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, 사업계획,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

및 이행하고,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(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)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

3. 재검토기한
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